

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5. 9. 1. 개정 판 (시행 2015. 9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2. 29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70/compare?from=422&to=42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6:41:1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, 대학원,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, 학부 및 대학원생,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(과), 대학원,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, 학부(과) 및 대학원생,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16-02-29>
제11조(교육·훈련 등)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1.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.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.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.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실험·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·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.<개정 2015-09-01>	제11조(교육·훈련 등)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6-02-29>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1.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.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.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.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실험·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·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.<개정 2015-09-01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(과), 대학원,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, 학부(과) 및 대학원생,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"를 "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"로 하고, "있다."를 "있다. <개정 2016-02-29>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